「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 제안일자 : 2026. 09. 23.
- ❍ 회부일자 : 2026. 10. 08.
- ❍ 상정일자 : 2026. 10. 13.

2. 제안이유

- ❍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일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 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망·전출 등 지급 제외 사유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장수축하금 환수 기준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

마.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부칙)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임.

❍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지급 제외·환수 사유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조례 시행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어 제도 시행 초기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